

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7]

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(제50조제2항 관련)

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.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제2항(제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금액

나.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다음 표에 따른 금액. 다만,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보험금액	적용대상
1억원 이상	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